

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

(앞쪽)

공 사 명						
①공 종	공종: 세부공종:			현장소재지		
발 주 자	상호(기관명)		구분 [] 공공기관 [] 민간		대표자	
	주소					
수 급 인	상 호			대 표 자		
	영업소 소재지					
도급방법	[] 단독도급 [] 공동도급([] 공동이행방식 [] 분담이행방식 [] 주계약자관리방식)					
계약성질	[] 장기계속공사 [] 기타공사					
②계약일	년 월 일		③착공일	년 월 일		④준공예정일
⑤총 노무비	(원)					

직접시공계획

직접시공 공종(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: 명)		하 도 급(예 정) 공 종	
⑥세 부 공 종	금 액	⑥세 부 공 종	금 액
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(직접시공 노무비)	원	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	원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.

이
호
지

수급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구비서류	1.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·공사단가 및 공사금액(노무비 포함)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. 예정공정표
------	---

※ 직접시공계획 통보(기재) 대상자

-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.

※ 기재 요령

1. ①공종: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.

공종	토목	건축	산업설비	조경공사
세 부 공 종	일반도로	단독주택 및 연립주택	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	수목원
	고속화도로	저층아파트(5층 이하)	산업생산시설	공원의 조성공사
	고속도로	고층아파트(6층 ~ 15층 이하)	원자력발전소	
	도로교량	초고층아파트(16층 이상)	화력발전소	
	철도교량	주거·사무실겸용건물	열병합발전소	
	댐	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	수력발전소	
	항 만	사무실빌딩	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	
	공 항	오피스텔	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	
	일반철도	인텔리전트빌딩(정보화빌딩)	하수종말처리장	
	고속철도	호텔·숙박시설	폐수종말처리장	
	지하철	관공서건물(11층 이하)	그 밖의 산업설비	
	도로터널	관공서건물(12층 이상)		
	철도터널	학 교		
	간 척	병 원		
	치산·치수 및 사방하천	전통양식건축		
	관개수로 및 농지정리	교회·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		
	상수도 1천mm 이상	밖의 문화재, 유적건물		
	상수도 1천mm 이하	경기장·운동장		
	정수장	전시(展示)시설		
	하수도	창고, 차고, 터미널건물		
	택지조성	공장, 작업장용건물		
	공업용지조성	기계기구설치(플랜트 제외)		
	그 밖의 토목시설	위험물저장소		
		그 밖의 건축물		

2. ②계약일. ③착공일.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: 공사의 계약연월일, 착공연월일,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, 최초착공연월일,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가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

3. ⑥세부공종: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.

예시) · 토목공사: 구조물공, 배수공, 안전시설공, 부대시설공, 교량공,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.

· 건축공사: 공동가설공사, 가설공사, 토공사, 철근콘크리트공사, 철골공사, 조적공사, 방수공사, 미장공사, 타일공사, 석공사, 금속공사, 창호공사, 유리공사, 도장공사, 수장공사(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), 지붕 및 흙통공사, 잡공사,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.

·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·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.

4.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(직접시공 노무비)와 ⑧하도급(예정) 총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(⑦+⑧)은 ⑤총 노무비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.